Global Business Report 07-037 | 2007. 09. 18

아세안을 잡아라 2
아세안 주요국 투자여건 비교분석
- 투자유망분야와 진출전략제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ASEAN 주요5개국 외국기업 진출동향 / 3

3 1. 개황
6 2. 국별, 산업별

Ⅱ. ASEAN 주요 5개국 외국인 투자여건 비교 / 15

15 1. 외자유치제도
27 2. 임금
34 3. 조세
42 4. 산업인프라,
49 5. 주재국내 글로벌 기업공장 진출동향
52 6. 주재국 특수상황과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Ⅲ. 최근 한-아세안 FTA 출범에 따른 진출 유망분야와 전략 / 57

57 1. FTA 투자, 서비스 협상에 대한 입장
60 2. 투자진출 유망분야와 전략
70 3. 종합평가

요 약

금년 6.1일부로 상품교역의 한-아세안 FTA 협정이 발효되었고, 투자 서비스 분야의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은 특히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진출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06년 8억8천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도 4.2억불 대비 211%가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은 26.8억불로 전년도 5.5억불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아세안 주요 5개국 총 투자진출액은 48.5억불로 전년도 14억불 대비 346%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투자, 서비스 분야 FTA 협정이 상호 협력차원에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동 협정이 완전타결시 투자 증가 추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본 보고서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5국을 대상으로 각 국의 투자여건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기전자, IT 등 비교적 발달된 산업분야, 필리핀은 레저관광산업, 광산개발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진출은 우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영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경제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지역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I. ASEAN 주요 5개국 외국기업 진출동향

1. 투자개황

○ 최근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2005년에서 2006년은 증가율이 두드러짐

○ 최근 5년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액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태국, 필리 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5개국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 U$백만)

연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2000	16,015	2,839	6,306	5,223	1,576
2001	15,202	3,143	N.A	4,216	1,224
2002	9,955	2,999	4,154	3,047	892
2003	14,278	3,192	5,988	4,116	627
2004	10,416	4,548	7,624	3,459	3,103
2005	13,579	6,840	12,388	4,731	1,739
2006	15,659	12,004	8,112	5,557	3,233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BKPM), 베트남(General Statistic Office,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태국(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말연 산업진흥청(MIDA), 필리핀(BOI, PEZA),

□ 인도네시아

○ 2006년도 외국인투자 승인은 1,718건에 US$ 156억 6천만으로 2005년 대비 30.4%가 증가하였음

- 신규 투자는 US$ 46억 2천 7백만으로 2005년 대비 16.5% 감소하였으나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는 US$ 59억 1천9백만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특히 기업 인수 등을 통한 투자변경건이 127.9%나 증가한 US$51억 1천 3백만을 기록

○ 2007년에 들어 1/4분기까지 투자승인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동기대비 5배 정도 증가한 US$141억을 기록하여, 지난해 연간 승인실적에 육박하고 있음

□ 베트남

○ 베트남은 1987년 대외개방하여 20년이 지남

- 1988~1996년까지 지속적인 투자증가세를 보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으나, 2003년부터 다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작년에는 US$120억을 초과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 2007년 1월 11일 WTO 공식회원국이 되고, 베트남 시장이 더욱 개방됨에 따라 현재 전세계가 주목하는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음

□ 태국

○ 2003년 이후 외국인 투자 지속 증가세를 나타냄

- 2000년에는 태국정부의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이 발효되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일본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2002년에는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

- 하지만 2003년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금액 기준으로 2002년 대비 129%나 증가

-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30%, 금액 기준으로 44%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지속

□ 말레이지아

○ 말레이시아는 197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06~2010 : 9차 개발 계획 진행 중)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기반을 조성

○ 경제 개발 초기 반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특히 전기, 전자산업)에 중점을 두어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투자가 급속히 진행

-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중국과 인도 등 주변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세현상과 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 증가세가 둔화

- 2005년과 2006년, 세계적인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유전 탐사 및 석유화학 산업 투자 증대, 대 중국 외국인투자가들의 말레이시아 복귀 및 말레이시아의 투자수익률 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증가

<말련의 연도별 외국인 투자 유치액>

(단위 : RM 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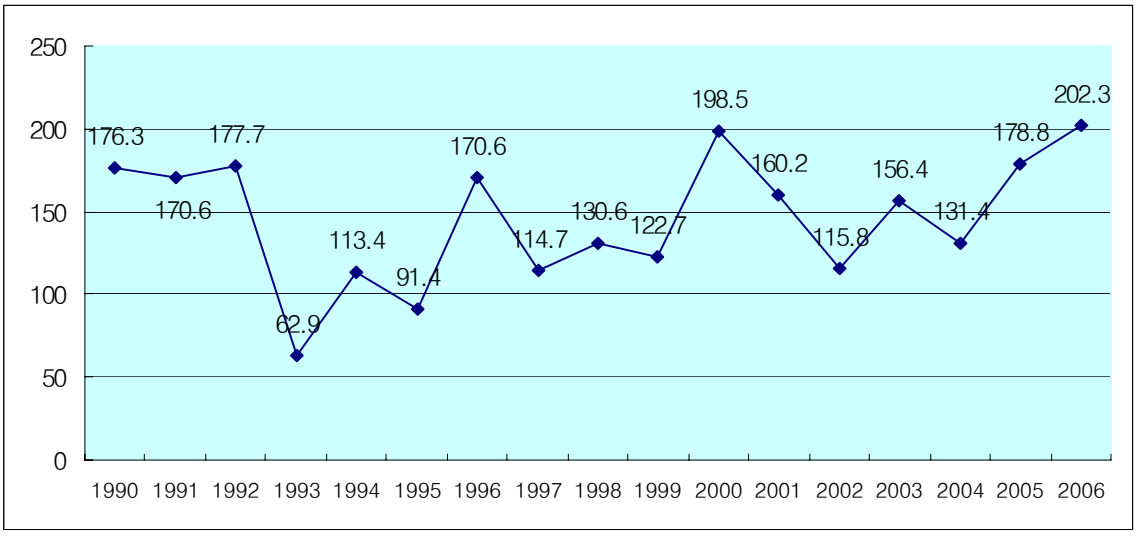

자료원 : 말련 산업진흥청(MIDA)

□ 필리핀

○ 필리핀 외국인 투자동향은 2005년 대비 2006년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음

- 2005년 대비 2006년의 투자 신고액 급증의 원인은 제조업 투자의 66.3% 증가와 2005년 까지는 미약했던 무역업 투자의 급증으로 볼 수 있음.

○ 필리핀 투자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은 점이 있음

- 시장접근성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
  ·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며, 크롬, 니켈 등 매장량이 풍부하여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보유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낮은 문화·종교적 배타성

- 다른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 보다 낮은 문맹률(6.6%, 2003년도 기준)과 높은 영어 사용률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노동력 보유.

- 외국인에 대한 문화·종교적 이질감이 적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진출 여건을 가지고 있음.

2. 각 국의 국가별, 산업별 투자동향

가) 인도네시아

○ 최대투자국은 말레이시아(2006기준)로서 US$ 23.3억의 투자를 승인받아 전체 투자 승인액의 14.9%를 차지함. 이어 싱가포르가 US$ 21.8억, 세이셀 공화국 US 14.1억, 영국 US$ 10.4억에 이어, 한국은 US$ 8.8억으로 다섯 번째를 기록함

○ 투자 승인건수 한국이 최다

- 투자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313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다 투자국으로, 건수 기준 2위국인 말레이지아의 203건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줌

<2006년도 대인도네시아 국별 투자 순위(투자 승인 기준)>

순위	국가	승인건수(건)	승인액(U$백만)	점유율(%)
1	말레이시아	203	2,329	14.9
2	싱가포르	245	2,186	14.0
3	세이셀공화국	10	1,410	9.0
4	영국	123	1,039	6.6
5	한국	313	887	5.7
6	스위스	4	478	3.1
7	일본	55	444	2.8
8	홍콩	16	399	2.5
9	프랑스	23	356	2.3
10	대만	27	219	1.4
	합계	1,718	15,659	100.0

자료원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누적기준 일본이 최대 투자국으로 1967년부터 지난해 까지의 투자승인 누계기준 US$ 394억2천만로 전체 인도네시아 투자승인 금액의 12.2%를 차지

- 한국의 누계기준 투자금액은 전체 7위이면서 건수로는 1위를 차지

○ 산업별 투자동향을 보면, 2006년의 분야별 투자승인 실적은 금속·기계·전자 분야가 가장 많아 84건에 US$ 29.2억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건설분야로 46건 US$ 25.6억이었으며, 화학·의약품, 종이 및 제지 등의 순임

산업분야	투자건수	투자금액(USD 천)
Food Crops & Plantation	51	779,981
Livestock	9	52,526
Forestry	5	13,750
Fishery	5	104,695
Mining	92	325,742
1차산업 소계	162	1,276,693
Food Industry	45	1,035,237
Textile Industry	85	163,014
Leather Goods Industry	12	32,628
Wood Industry	15	137,918
Paper & Printing Industry	23	1,170,552
Chemical & Pharmaceutical	57	1,541,083
Rubber & Plastic Industry	34	100,720
Non Metalic Mineral Industry	8	785,160
Metal, Machinery, Electronics Industry	84	2,923,546
Medical, Optic & Measurement Equipment	1	2,430
Vehicel & Transport Equipment	28	399,419
Other Industry	30	32,446
2차산업 소계	422	8,324,154
Electirycity, Gas and Water	16	1,180,126
Construction	46	2,562,138
Trade & Reparation	641	1,170,508
Hotel & Restraurant	74	268,385
Transport, Storage	82	296,060
Real Estate, Industrial Estate	24	73,571
Other Service	251	507,478
3차산업 소계	1,134	6,058,267
전 체	1,718	15,659,115

주 : 2006년도 투자승인기준
자료원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나. 베트남

- 2007.7월 현재 전세계 77개국이 베트남에 투자했으며,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69.7%(이하 금액 기준), 유럽이 13.9%, 미국이 13.4%로 나타남

- 한국이 대베트남 1위 투자국이며, 한국, 싱가폴, 대만, 일본, 홍콩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투자의 60.5%를 차지

<최근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국 가	2004		2005		2006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	대만	156	453.4	164	366.9	115	218.1
2	싱가포르	47	123.9	63	164.1	52	270.5
3	한국	159	339.7	227	592.3	207	2,683.0
4	일본	61	224.3	107	437.0	137	996.2
5	홍콩	38	198.1	41	407.8	21	1,142.0
6	영국령버진군도	25	176.7	36	112.3	19	348.3
7	네덜란드	4	48.2	10	33.0	11	100.9
8	프랑스	9	6.8	23	24.1	19	36.1
9	미국	30	74.9	56	157.2	51	769.8
10	말레이시아	26	83.8	21	172.3	18	16.5
11	기타	87	125.6	76	860.9	94	1,093.4
	외국인 투자 총계	723	2,222.2	922	4,268.5	833	7,839.0

자료원 :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산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투자가 62.4%, 서비스업 투자가 31.49%, 농/수산/임업이 6.1%인 것으로 나타남

산업	건수	투자금액(미$백만)
공업, 산업	5,182	43,859.63
석유, 가스 산업	34	2,082.54
경공업	2,207	11,934.54
중공업	2,247	21.979.01
식품공업	289	3,451.06
건설업	405	4,412.48
농업, 수산업, 임업	885	4,182.93
농업, 임업	766	3,830.74
수산업	119	352.19

서비스업	1,669	22,487.91
수송 및 통신업	197	4,175.82
호텔, 여행업	197	5,159.44
금융업	64	840.15
교육, 건강, 문화산업	245	1,159.46
신도시 개발	8	3,227.76
아파트, 사무실 건설	131	4,735.16
산업단지 개발	23	1,138.52
기타	804	2,051.59
합계	7,736	70,530.47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Aug13, 2007)

다. 태국

○ 일본의 투자비중이 절대적임

- 2006년 태국 투자청의 총 투자승인 건수는 751건, 총 투자금액은 약 US$ 70억으로 전년대비 각각 3.9%, 1.3% 감소

- 주요 투자국가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었으며, 한국의 투자금액은 약 US$ 1억600만을 기록

(단위 : U$백만)

순번	국가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일본	354	4,266.14	353	3,037.29
2	미국	48	215.77	46	1882.67
3	싱가포르	69	358.14	62	494.35
4	대만	57	408.64	63	276.1
5	홍콩	18	55.18	18	264.47
6	스위스	20	375.02	11	208.76
7	네덜란드	17	368.12	28	164.89
8	말레이시아	36	506.73	35	141.53
9	한국	31	36.88	24	106.12
10	인도	16	27.46	18	70.42
11	기타	110	580.38	99	225.78
총 계		782	8,091.12	751	7,030.13

○ 산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금속가공 및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화학, 제지 분야 투자 증가

- 최근 5년간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금속가공 및 전기전자 산업으로서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대부분은 일본 기업의 투자였음.

- 2006년에 일본은 총 353건, 약 US$ 30억 3천 7백만을 태국에 투자하였는데, 이중 금속가공과 전기전자 분야가 일본 투자규모의 각각 39%, 29%에 달했음.

○ 2006년의 경우 금속가공, 전기전자 분야에의 투자가 총 외국인투자의 약 42%를 차지했고, 그 외에 화학, 서비스, 농업 및 경공업 등의 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졌음. 특히 화학·제지 분야의 투자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US$ 26억을 기록

- 금속가공 및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 집중 현상은 일본의 자동차, 전자산업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도요타, 혼다를 위시한 대부분의 일본 승용차 메이커가 태국에 진출해 있으며, 태국은 내수 및 아세안 역내시장을 겨냥한 일본의 전진 생산기지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태국이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과 FTA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태국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들 일본 업체들의 대 태국 재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음.

(단위 : U$백만)

분야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속 가공	227	3,502.12	232	1,430.04
전기전자	162	2,131.14	166	1,527.55
화학, 플라스틱, 제지	129	886.67	81	2,654.88
서비스 및 인프라스트럭처	125	831.82	137	811.34
농업생산품	45	283.83	39	294.02
경공업	76	239.49	75	245.22
광물·세라믹	18	216.08	21	67.08
총 계	782	8,091.12	751	7,030.13

주 : 승인기준, 해외자본 10%이상 투자기준
자료원 : 2007. 8월 BOI(태국투자청)

라. 말레이시아

○ 2006~2007년간 최근 외국인 투자는 일본, 네덜란드, 싱가폴, 미국 등 국가로부터의 투자유입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최대 투자국으로 US$1,958.6백만을 기록

<말련의 2006년, 2007년(1~6월) 국가별 외국인 투자 유치액>

(단위 : US$백만)

연번	국가	2007(1~6월)		2006	
		건수	투자유치액	건수	투자유치액
1	이란	2	874.4	.	.
2	일본	31	756.6	81	1,202.0
3	독일	13	467.4	15	63.2
4	네덜란드	3	410.1	13	894.8
5	싱가폴	58	408.1	130	513.5
6	미국	17	299.2	38	674.8
7	케이만군도	1	254.8	2	234.4
8	한국	12	250.6	18	119.2
9	호주	9	78.1	20	697.5
10	버뮤다	1	44.6	1	21.7
11	기타	120	290.8	-289	1,090.5
	총계	267	4,134.7	607	5,511.6

자료원 : 말련 산업진흥청(MIDA)

○ 2006~2007년간 산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전자, 화학과 석유화학 분야의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자 및 전자부품분야는 US$45억4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2007년 이란의 투자가 가장 많은 것은 20만 배럴 용량의 정유공장 및 운송 파이프라인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한 것으로 이란의 국영석유회사에서 출자한 건임

<말련의 2006년, 2007년(1~6월) 산업별 해외 투자 유치액>

(단위 : US$백만)

산업별	2007(1~6월)		2006	
	건수	투자유치액	건수	투자유치액
Petroleum Products(Incl.Petrochemicals)	1	848.1	5	164.8
Electronics & Electrical Products	64	2,203.2	125	2,343.7
Basic Metal Products	8	28.0	17	623.46
Chemical & Chemical Products	31	260.2	97	826.02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5	250.2	19	262.18
Food Manufacturing	16	66.2	39	243.96
Machinery & Equipment	25	106.9	53	179.0
Paper,Printing & Publishing	7	23.9	14	25.45
Transport Equipment	11	80.7	24	59.02
Rubber Products	8	97.6	23	70.2
Plastic Products	29	72.5	49	206.32
Fabricated Metal Products	19	12.2	62	167.93
Wood & Wood Products	8	4.8	17	78.04
Furniture & Fixtures	12	6.3	17	14.99
Scientific & Measuring Equipment	4	28.6	14	181.09
Textiles & Textile Products	9	7.2	19	41.46
Beverages & Tobacco	3	0.057	2	0.27
Leather & Leather Products	0	0	1	0.27
Miscellaneous	7	37.57	10	23.34
합계	267	4,134.74	607	5,511.68

자료원 : 말련 산업진흥청(MIDA)

마. 필리핀

○ 한국은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1위 국가

- 2006년도 국별 대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위 한국 약 US$ 10억 5800만 △2위 미국 약 US$ 7억 4400만 △3위 일본 약 US$ 3억 9100만 △4위 중국 약 US$ 3억 4900만 △5위 영국 약 US$ 1억 1400만을 기록하였음.

- 특히,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필리핀 투자 1위 국가로 부상하였는데, 한국의 2006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401.7%가 급증하여 한국의 필리핀 진출 열기를 반영하고 있음.

- 실례로 삼성전자, 한국전력, 삼성전기, 한진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전기전자, 전력, 조선 등의 각 분야에서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사회기여 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

○ 삼성전자 (필리핀 법인)는 2006년 필리핀 정부로부터 수출과 사회 기여 부문 최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최근 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 백만페소)

국가	2003	2004	2005	2006
호주	986	170	563	689
프랑스	20	330	46	1,106
독일	452	306	418	1,345
일본	8,841	26,596	27,539	20,066
한국	713	3,260	10,828	54,327
말레이시아	45	10	69	856
네덜란드	3,866	1,473	19,208	7,188
중국	311	127	195	17,935
싱가포르	295	1,524	890	6,396
대만	2,554	1,654	1,394	1,953
영국	2,381	1,683	195	5,887
미국	10,432	27,108	14,913	38,199
기타	3,114	109,654	19,549	9,933
계	34,010	173,895	95,807	165,880

주 : 무역관보고 종합

○ 산업별 투자통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대 필리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동향을 볼 때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 신고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주재국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전체 산업 중 약 54%를 차지)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필리핀은 전기, 수도, 가스 시설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체 기술력이 미흡하여 외국기술 즉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2005년 대비 2006년의 투자 신고액 급증의 원인은 제조업 투자의 66.3% 증가와 2005년 까지는 미약했던 무역업 투자의 급증으로 볼 수 있음.

- 제조업 투자는 인텔, 삼성, 엠코, 도요타 등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부문의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생산거점화 전략으로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를 주도하였음

- 2006년에는 한국의 한진중공업이 수빅 조선소에 10억불을 투자하는 등 향후 전기전자 및 조선 부분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 미$백만)

산업	2003	2004	2005	2006
계	627	3,103	1,739	3,233
농업	0	0	5	46
광업	16	4	133	14
제조업	381	782	1,230	2,196
전기	2	36	197	9
가스	34	1,722	17	0
물(Water)	0	0	0	0
건설	47	20	1	1
무역	14	1	2	187
수송	4	0	7	26
창고업	6	3	0	0
통신	22	0	0	58
금융/부동산	17	5	4	149
민간 서비스	85	528	159	339

자료원 : 무역관보고 종합

II. ASEAN 주요 5개국 투자여건 비교

1. 외자유치제도

가. 인도네시아

□ 외국인 투자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도입해 오고 있음. 특히 1980~90년대 수많은 규제완화가 실시되어 1994년부터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외자 100% 투자가 가능

○ 2007년 4월에는 기존의 내국인 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합친 신투자법이 발효

○ 신투자법은 67년의 외국인투자법, 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골격법으로서 재정비되었고, 인니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대폭 포함

○ 신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본국 송금 포함), 조세혜택, 재산권 강화, 거주 편의 강화 및 통합투자서비스 제도의 시행, 투자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규정 등임

○ 그러나, 앞으로 투자정책의 수립과 이행관련 투자조정청(BKPM)과 정부부처(무역부 등)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각종 허가권 발급기관 문제,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이행 여부 등은 향후 신투자법 보완규정(대통령령 및 각종 시행령)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임

□ 투자제한규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효한 개정 투자법 '2007년 제 25호'의 시행세칙에 맞추어 대통령령 '2007년 제 76호'와 '제 77호'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제한 분야를 2007년 7월3일부터 발효시킴

○ 이번 규정에는 25개 업종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며, 15개 분야 1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외국자본 출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함

○ 신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승인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승인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통신, 환경, 식량안보 및 천연자원 다양성 보존 등과 관련된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제한 강도를 높임

○ 대중매체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20%로 제한하며, 대중교통회사는 49%, 전력생산 배분.공급회사 95%, 25헥타르 이상의 야자유 농장 95%, 의약품 회사는 75%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됨

○ 민간병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5%까지 허용되고, 보건서비스지원사업이나 의료장비 대여업 같은 부분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됨. 호텔이나 여관, 가라오케, 마사지업소 등을 포함한 14종류의 관광산업군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50%까지 허용됨. 농업은 위치제한이 있으며,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야 함.

○ 교통.통신 분야의 항공 운송업은 49%, 정보통신분야의 유선전화 49%, 이동통신 및 위성전화는 65%까지 외국자본출자가 가능함

○ 통신분야는 종전 규정은 최대 95%까지 외국자본의 출자를 허용하였으나 유무선 통신회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지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 또한 정부가 지방정부규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경우 19개 사업군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 메단과 수라바야에서는 민간병원과 유치원이 위치제한을 받고 자카르타에서는 보건지원서비스(의료장비임대업)도 위치제한을 받게 됨.

-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대통령령 76호 및 77호/2007년 7월 3일)

□ 투자우대 규정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있음

○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특정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1 / 2007)이 올해 초 발표되었음

○ 동 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통령령 7호, 1999년 1월14일) 규정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됨

- 대상 : 2007년 1월이후 BKPM 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신규투자기업 및 기투자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중 식품, 섬유, 제지 등 정부지정 15개 업종을 대상

- 내용

a) 소득공제

·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

· 상업생산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실사를 통하여 세금당국이 결정

b) 가속상각

유형고정자산 그룹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및 이연상각	
		정액법	정률법
I. 비건축물			
Category I	2 years	50%	100%
Category II	4 years	25%	50%
Category III	8 years	12.50%	25%
Category IV	10 years	10%	20%
II. 건축물			
영구	10 years	10%	-
비영구	5 years	20%	-

c)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근거한 배당 원천세 경감

d) 결손금 손실보상기간 5년, 특정 조건하에서 최대 10년

3) 적용대상 15개분야 : 첨부 참조

나. 베트남

□ 투자유치 정책

○ 베트남은 국민경제 발전, 천연자원 개발, 노동력 및 기타 국가성장 잠재력 향상 등을 위해 외국자본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자 1987년 12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 9월에는 외자법 시행령을 공포

○ 이후 보다 유리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을 실시

○ 2005년말에는 WTO 가입을 위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기업법', '반독점법' 등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노력

○ 최근에는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로한 신규 투자법/기업법을 2006.7.1부로 발효

<외국기업 관련 구법과 신법 주요 차이점>

차이점	구법(舊法)	신법(新法)
목적	2006년 7월 1일 전에는, 즉 새로운 투자법과 기업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외국 회사는 외투법에서 정한 회사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었음	2006년 7월 1일자로, 외국 기업도 기업법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회사를 베트남기업과 동일하게 설립할 수 있음
투자허가서 (IC) 발급 기관	- 3개의 기관 : 중앙정부 계획투자부(MPI) ; 지방정부 계획투자 부서(DPI) ;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BOM) - 투자 자본금(미화 1000만불 이하)과 관련하여 성이나 시 정부에 제한된 권한을 부여함.	- 2개의 기관 : 지방정부 계획투자부(DPI)와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BOM) - DPI와 BOM는 투자허가서(IC)의 발급을 위해 수상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에 한해서 IC를 발급할 권한이 있음. - 중요한 사업은 투자 자본금에 상관없이, 또는 투자 자본금이 1조5000억 VND 이상(93,750,000 USD)인 사업일 경우, 수상의 승인이 필요

차이점	구법(舊法)	신법(新法)
투자허가서 발행 조건	- 투자 자본금 - 토지 면적 - 프로젝트 유형	- 투자 자본금 - 프로젝트의 유형: 수상의 비준이 필요한 프로젝트에만 해당
투자허가서 취득 절차	- 평가 또는 등록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승인허가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더욱 간단해 짐 - 평가 또는 등록 - 조건부 프로젝트 혹은 수상의 비준이 필요한 프로젝트지도 계획투자처 혹은 관리위원회에 투자 승인 허가서 관련서류를 제출
투자허가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	외국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 또는 최근 2년간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함	- 은행잔고증명이나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재정능력 보고서를 준비하여 책임을 져야 함
투자 형태	베트남 정부가 국내 회사(공공 전자 통신 방송 교통 운송업 서비스 등)를 통제 또는 보호하고자 하였기에, BCC 또는 합작회사의 형대로 투자하여야 함.	- 정해진 투자 형태는 없음 - 그러나, 여전히 조건부 프로젝트의 경우에 합작 필수 사항 존재. 베트남 정부는 세부적인 필요조건에 관한 관계 시행령이나 회람(통지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
정관자본 법정자본	- 제한 : 외국 기업의 법정자본은 최소한 총투자 자본의 30%를 차지해야 함. - 기존법에서는, "법정자본금"이란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뜻한다. - 외국 투자법 제16조에서, 법정자본금을 감자하는 것은 금지하였음.	- 제한 없음 : 투자법의 어느 조항과 시행령 No.108에도 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 신규법 하에서,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법정 자본금"이란 개념대신 "정관 자본금"으로 표현 - 정관 자본의 감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 (1인유한회사의 경우 규제조항 있음)
만장일치 승인 조건	외국 투자법의 제14조에서, 합작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즉 대표이사의 임명과 면직, 합작 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 등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음.	- 만장일치 승인 필수사항 삭제. 이는 기업법에서도 마찬가지임.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주주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없음. - 중요 사안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주주)이 정관 자본의 최소 65%~75%를 소유하는 경우, 이들이 내린 결정은 유효함

다. 태국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등 투자청(BOI)의 각종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태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한하며, BOI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결과를 BOI에 보고해야 함

○ 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태국 산업의 질 및 생산 기준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THB 1천만(약 US$263,000) 이상의 투자는 반드시 ISO 9000등 유사한 국제 인증을 받아야 함

○ 수출 및 국산품 이용규정 철회

- 국제 교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협정에 위반되는 생산품의 수출 비율 및 원료의 국산품 이용 규정은 철회되었음

○ 지역의 균등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투자우대

- 저소득 및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는 특별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형 투자중시

- 최소 THB 1백만(약US$26,30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중소형 투자도 BOI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음

○ 투자장려 분야에 대한 우선권 부여

- 농업 및 농업생산품, 고도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공익 및 사회기반시설, 환경보호, 기타 정부지정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 태국은 제조업 투자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외국인 기업법(Foreign Business Act 1999)은 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Paper Company를 세우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음.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태국에서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구 분	내 용	해당 업종
Category A	투자금지 업종, 단 특별법이나 조약에 의해 별도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	신문방송업, 쌀 경작, 조경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 영해내 수산업, 태국식물 채취업, 태국 골동품, 문화재 교역 또는 경매, 부처상 주조사업, 토지매매
Category B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정부(내각)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나, 미국인의 경우 태국-미국 간 상호협정에 의거,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 시 내각 승인 없이 투자가능	<그룹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분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그룹 2> 예술, 문화, 전통, 민속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그룹 3>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사업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 - 광산 개발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구 분	내 용	해당 업종
Category C	원칙적으로 금지됨. 투자청, 투자위원회 또는 상무부로부터 외국인기업 허가(Alien Business Licence)를 득할 경우에만 가능. 주로 외국인기업에 비해 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	제분업, 수산업(양어업), 임업, 합판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서비스업, 법률서비스, 건축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조항 별도),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조항 별도),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국내무역, 소매업(총자본금 THD 1억 이하), 도매업(점포당 자본금 THD 1억 이하), 광고업, 호텔업(호텔경영 예외),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식음료 판매업, 식물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

라. 말레이시아

□ 투자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내·외국인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라고 해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없음. 하지만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점차 증가추세

○ 말레이시아의 투자 인센티브는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모두 세금감면 형태로 주어지며, 크게 신규투자 및 재투자, 그리고 사안별 기타 인센티브로 구분. 신규 및 재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투자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기타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개별 특별법에 기초. 투자 인센티브의 80% 이상은 개척자지위(Pioneer Status)와 투자세 공제(ITA)를 통해 제공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활동에 대한 자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합작투자를 장려

○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로 외국인 투자정책 역시 이러한 산업정책의 일환. 따라서 섬유산업이나 단순 조립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는 선별적으로만 허용

○ 말련 정부는 2002년에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자 제조업에 한해 2002년 말까지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2003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기존의 수출비중이나 팜 오일, 플라스틱, 목재 등 말레이시아 전통산업 투자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에 관한 한 100% 외국인에 의한 지분 소유가 허용

○ 금융업과 유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지분제한 규정이 있음. 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동안 말레이계(부미푸트라)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외국인 30%)을 소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 말부터 유통업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 전체 지분의 30%는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계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의 대부분의 제한이 철폐

□ 관련법규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본 법규와 지침은 1986년에 제정된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 (투자진흥법)과 Foreign Investment Committee(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제정한 Foreign Investment Guideline(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 근간임

- 전자는 통상 산업부에서 주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투자법령으로서 전반적인 투자진흥 규정. 후자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일종의 투자 지침

- Foreign Investment Guideline(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은 2001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내·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는 투자 분야별, 규모별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모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쳐야 하는 곳

□ 부문별 투자 인센티브

○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하기의 개척자자격(Pioneer Status) 또는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 개척자자격 (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 부여.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감면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달)로부터 5년간. 추가 감면혜택으로 투자 촉진 지역인 페릴주, 사바주, 사라왁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회랑(클란탄 주, 트렝가누 주, 파항 주, 조호 주의 머싱 지역)에 위치하는 회사는 5년간의 세금 감면기간 동안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 전액 면제

-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 제공. 동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 투자 촉진 지역인 페릴주, 사바주, 사라왁주 및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회랑에 소재한 회사의 경우, 5년 내 발생한 자본지출에 대해 100%의 공제혜택

○ 사업운영본부(OHQ) 장려책

- 자본금 RM 50만 이상, 총 사업지출 연간 RM 150만 이상의 회사로 말련 내 설립되어 말련 외의 관계회사나 사무소에 아래 중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경영/관리 서비스
  * 재무/자금관리 서비스
  * 기업재무자문 서비스
  * 연구개발
  * 교육 훈련 및 인사관리

- 상기 서비스 제공대가로 받는 수입(사업소득, 이자, 로열티)에 10년간 소득세 면제. 회사의 필요여건에 따라 외국인 파견직 승인이 가능

- 국외 관계회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상 필요한 외환자금의 경우, 중앙은행 승인 없이, 말련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이 가능. 말련 내에서 사용할 현지화의 경우, 최고 5천만 링깃까지 자유롭게 차입가능하며, 말련 내 차입금이 5천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송금을 한다면 국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증권 취득 허용

- 어느 은행이든 지정은행을 정하여 외환계정(1통화 및 복수통화)의 개설이 가능하며, 동 계정을 통해 외환형태로의 대금영수가 가능

- 말련 내에서 제공 불가능한 전문서비스의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 투자 규제사항

○ 노동 집약산업 규제

-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RM 55,000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

- 단,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련 정부의 권장활동과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MSC 등), 그리고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

□ 서비스 부문

○ 지분율 제한 및 참여제한

-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율이 70%

- 통신 부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30~49% 수준

-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 참여를 배제하고 국영석유업체인 Petronas사와 생산량분배계약(PSA)을 맺게 하고 있음. 이외에 전문 서비스업, 농업, 건설업에 대해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

□ 내국인지분의 인종간 강제배분

○ 말련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미푸트라(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지칭)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하기와 같이 인종간 지분을 강제 배분

<외국인 지분율에 따른 내국인 지분제한 비율>

(단위 : %)

외국인 지분	내국인 지분	
	부미푸트라	비부미푸트라
70% 이상	잔여분	-
70% 미만	30%	잔여분

자료원 : 말련 산업진흥청(MIDA)

마. 필리핀

□ 외국인 투자여건

○ 필리핀은 1976년 자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법 (Investment Incentive Act)'을 제정하고, 이듬해 동 법을 바탕으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을 신설하여 내·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

○ 1987년에는 '종합 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을 제정하여, 그 간 분산되어 있던 투자 관련 법규를 통합, 내·외국인의 투자 인가절차를 간소화 시켰음

○ 필리핀 투자청(BOI)은 매년 상반기 '종합 투자법'을 바탕으로 투자우대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중점 투자 유치 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을 토대로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의 '중점 투자 유치 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은 투자유치 확대분야(Preferred activities), 제한 투자유치 확대분야(Mandatory Inclusions-자국내 분야별 관련 법규에 근거), 수출확대 장려분야(Export Activities), 외국인 투자 확대 유도 프로그램(Projects under Retention,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Program), 상품 및 서비스 설비 이전에 대한 우대조건 (Relocation Activities) 등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1991년 '외국인 투자법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을 제정하였음

- 동 법은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Negative List)'을 제외하고 100%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

2. 임금수준 (노임)

가. 인도네시아

□ 임금수준

- 인도네시아는 주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 지역별 또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등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음

- 자카르타 특별주는 2007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9.95% 증액한 90만560루피아(약 100불)이며, 서부자와주는 15.5% 증가한 51만6,840 루피아(약 57불), 반뗀주는 12.8% 증가한 74만6,500루피아(약 83불), 리아우주는 9.9% 증가한 71만 루피아(약 79불)임

- 특히 우리나라 투자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0만 루피아(약 100불) 수준이 되는 자카르타, 서부자바주의 버까시 및 반둥, 반텐주의 땅그랑 지역 등에 80% 이상 위치해 있어, 점차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 IDR)

NO	PROVINCE	2005	2006	2007
1	WEST SUMATERA	540,000 (U$56)	650,000 (U$71)	725,000(U$80)
2	RIAU	551,500 (U$57)	637,000 (U$70)	710,000(U$79)
3	ISLAND RIAU	557,000 (U$57)	760,000(U$83)	805,000 (U$89)
4	JAMBI	485,000 (U$50)	563,000(U$61)	658,000(U$73)
5	SOUTH SUMATERA	503,700 (U$52)	604,000(U$66)	753,000 (U$83)
6	LAMPUNG	405,000 (U$42)	505,000(U$55)	555,000(U$61)
7	WEST JAVA	408,260 (U$42)	447,654(U$49)	516,840(U$57)
8	CENTRAL JAVA	390,000 (U$40)	450,000(U$49)	500,000(U$55)
9	EAST JAVA	340,000 (U$35)	390,000(U$43)	448,500(U$50)
10	D.K.I JAKARTA	771,843 (U$80)	819,100(U$89)	900,560(U$100)
11	BANTEN	585,000 (U$60)	661,613(U$72)	746,500(U$83)
12	D.I. YOGYAKARTA	400,000 (U$41)	460,000(U$50)	500,000(U$55)
13	BALI	447,500 (U$46)	510,000(U$56)	622,000(U$69)
14	CENTRAL KALIMANTAN	523,698 (U$54)	634,260(U$69)	665,973(U$74)

자료원 : Ministry of Manpower & Transmigration / Business New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환율 : 2005(U$1 : 9,705 RP), 2006(U$1 : 9,159 RP), 2007 6월기준(U$1 : 9,039 RP)

○ 직종별/업종별 임금

구 분		근무시간(주)	월 급여수준(2006)
직종별	생산직	46	770,061
	사무직	55	3,039,832
업종별	제조업	46	806,264
	서비스업	45	1,594,065

자료원 : 인니통계청 노동통계 2006 (U$1 = 9,157 RP)

나. 베트남

□ 임금수준 (노임)

○ 법정 최저임금(외투기업)

- 지역별로 하노이, 호치민시의 각 군은 월 VND 870,000(U$55) 수준이며, 하노이, 호치민시의 각 현과 하이퐁시, 동나이성의 빈호아시 등은 월 VND 790,000(U$50) 수준임. 기타 군, 시, 성 지역은 월 VND 710,000(U$45) 수준.

<지역별 최저 임금 (2006.2.1부 시행)>

지 역	최저임금
하노이시, 호치민시 각 군	VND 870,000/월 (약 US$55)
하노이시, 호치민시 각 현, 하이퐁시, 동나이성의 빈호아시, 바리아붕따우성의 붕따우시, 꽝닌성의 하롱시, 빈증성의 Thu Dau Mot, Thuan An, Di An, Ben Cat, Tan Uyen	VND 790,000/월 (약 US$50)
기타 군, 시, 성	VND 710,000/월 (약 US$45)

자료원 : 02/2006.1.6/ND-CP-수상령

<직종별(생산직, 사무직) / 업종별(제조업, 서비스업) 임금 수준>

구 분		근무시간 (정규)	월 급여수준 (주1)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 보장세
직종별	생산직	1일 8시간, 주 48시간	US$70~100	US$45~55 (상기표 참조)	근속년수 1년마다 월급여의 50%	기본급의 17%(사회보험 15%, 건강보험 2%)
	사무직	상동	US$200~1,000			
업종별	제조업	상동	US$70~500			
	서비스업	상동	US$200~1,000			

주 : 급여수준은 호치민 무역관 추정치

다. 태국

□ 임금수준

<2006년도 태국의 지역별 일 평균임금>

(단위 : 바트)

지 역	일 평균임금
방콕	184(4.85 U$)
방콕인근	184(4.85 U$)
중부(Saraburi)	163(4.30 U$)
동부(Rayong)	155(4.09 U$)
서부(Ratchaburi)	147(3.88 U$)
북부(Chiang Mai)	155(4.09 U$)

자료원 : 숫자로 본 태국 (Thailand in Figures 2005-2006, 환율 U$1 = 37.92바트)

○ 시간외 수당은 50%이상을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 권한을 가진 자, 철도차량의 배열업무, 운수서비스 업무, 수문개폐에 관한 업무, 수량측정업무, 경비 업무,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옥외작업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하고, 휴일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임금 체불 시에는 연이자 1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휴일 및 연차휴가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법률에 의한 군사훈련 등에 따른 휴무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만 1년에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구 분		근무시간(정규)	급여수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장세
직종별	생산직	주48시간	일 200바트 (5.27 U$)	일 191바트 (5.03 U$)	없음	4.5%
	사무직	주48시간	월18,000~ 20,000바트 (475U$~527U$)	월 7,260바트 (191U$)	없음	4.5%

구 분		근무시간(정규)	급여수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장세
업종별	제조업	주48시간	월7,536바트(숙련공 기준)(199 U$)	일 191바트 (5.0 U$)	없음	4.5%
	서비스업	주48시간	월9,000~12,000바트 (237U$~316U$)	일 191바트 (5 U$)	없음	4.5%

주1. 방콕기준
주2. 태국 최저임금은 교육수준과 숙련도(Skill)기준으로 정해짐
주3.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음.
자료원 : 태국 노동부, 투자청

라. 말레이지아

□ 임금 수준

○ 말레이시아의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 정도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음. 하지만 임금수준에 비해, 노동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고, 산업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변국에 비해 고도화되어, 직종간 또는 직급간의 임금격차는 큰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 직종별 임금 수준>

(단위 : US$)

구 분		근무시간(정규)	월 급여수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장세
직종별	생산직	1일 8시간 이내 (주당 48시간 이내)	238~574 중급기술공	규정 없음	EPF(근로자 공제기금)	SOCSO (사회보장기구)
	사무직	1일 8시간 이내 (주당 48시간 이내)	201~470 경리직	규정 없음	EPF(근로자 공제기금)	SOCSO (사회보장기구)
업종별	제조업	1일 8시간 이내 (주당 48시간 이내)	238~677 중급 기술공-생산 감독	규정 없음	EPF(근로자 공제기금)	SOCSO (사회보장기구)
	서비스	1일 8시간 이내 (주당 48시간 이내)	201~1,565 경리직원-회계사	규정 없음	EPF(근로자 공제기금)	SOCSO (사회보장기구)

자료원 :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MEF)

<2006년 말련 일반직 평균임금 관련 통계(제조업 기준)>

직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RM		US$	
Secretary	1,381	2,745	390	774
IT Supervisor	1,363	3,248	385	916
Chargeman (Medium Pressure)	1,270	2,544	358	718
Production/Technical Supervisor	1,142	2,364	322	667
Foreman	1,100	2,758	310	778
Boilerman	993	2,154	280	608
Maintenance Technician	947	2,192	267	618
Quality Control Inspector	941	1,878	265	530
Storekeeper	870	1,900	245	536
Electrician	862	2,039	243	575
Production Operator (Semi-Skilled)	843	2,033	238	574
Welder	758	1,707	214	482
Accounts Clerk	713	1,666	201	470
Clerk/Typist	696	1,612	196	465
Telephone Operator	696	1,533	196	433
Laboratory Assistant	685	1,514	193	427
Data Entry Clerk	671	1,522	189	429
Lorry/Truck Driver	628	1,676	177	473
Security Guard	606	1,380	171	389
Production Operator (Unskilled)	444	1,003	125	283

자료원 :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MEF)

마. 필리핀

□ 임금정책

○ 임금정책은 노동 고용부 산하 National Wages & Productivity Commission (NWPC)가 관장하고 있으며 RA 6727(1989년 공포)에 기초하여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음.

○ 수도권인 METRO MANILA의 최저임금은 1일당 362페소(약U$ 7, 2007년 8월 현재), 마닐라 근교로 우리나라 기업의 입주가 가장 많은 CAVITE의 일당 최저임금은 1일당 272페소(약U$5.3, Cavite Economic Zone 기준) 수준임

○ 초과 근무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무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피고용자 모두 초과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수도권 업체들의 경우 교통비, 식비 보조 성격의 생활 보조비 (ECOLA) 50페소/일 (2007년 8월 현재)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 함.

○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등 물가상승으로 노동단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추세임.

- 시간외 근무수당
  - · 정규 근무일 : 정상 임금의 125%
  - · 휴일, 일요일 및 특별 휴일 : 정상임금의 130%
  - · 야간 근무자(22:00~06:00)의 근무수당 : 정상임금의 110%
  - · 법정 공휴일(Regular Holiday)이 주당 정기휴일과 겹친 경우 200%

○ 휴일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 하는 일요일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하지 않음. 주당 6일 근무 후 최소한 24시간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2004년 12월 노동부 권고령(Labor Department Advisory No. 2)이 발표되어, 유해 작업장,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10시간 또는 최대 12시간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주당 근무시간 48시간을 준수하고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근무 일수를 6일에서 5일로, 또는 5일에서 4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단,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지불해야 함.

<업종별, 직종별 임금수준>

구 분		근무시간 (2003년 기준)	급여수준 (Metro Manila - 2002년 6월 기준)	최저임금 (Metro Manila - 2007년 8월 기준)	퇴직금 (정규직)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금 기준)
직종별	생산직	주 49.1시간	N/A	362 페소 (U$ 7)	월급여의 절반 금액 × 근무 년차	33.3~500 페소 까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납입
	사무직	주 45.4시간	N/A	362 페소 (U$ 7)		
업종별	제조업	주 43.6시간	7,705 페소 (U$ 148)	325 페소 (U$ 6)		
	서비스업	주 36.2시간	7,784 페소 (U$ 150)	325 페소 (U$ 6)		

자료원 : 2004 Yearbook of Labor Statistic 및 필리핀 노동부(DOLE)자료
* 주재국의 급여수준 통계자료가 업종별로만 등재되어 있어, 직종별 급여수준은 N/A

3. 조세

가. 인도네시아

□ 법인세

○ 외국 납세의무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된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해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외국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해외원천 소득에서 세액공제함

○ 법인세율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최초금액부터~50,000,000	10
50,000,001~100,000,000	15
100,000,001 이상	30

□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 : 연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12월의 기간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 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인도네시어에 거주하는 경우

○ 일반 개인 거주자의 원천세율

과세표준금액(루피아)	세율(%)
최초금액부터~25,000,000	5
25,000,001~50,000,000	10
50,000,001~100,000,000	15
100,000,001~200,000,000	25
200,000,001 이상	35

○ 일반 개인거주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금액

항목	금액/연간 기준(단위 : IDR)
납세자 본인 기초공제	2,880,000
배우자 공제	1,440,000
부양자 공제(최고 3인까지)	1,440,000/인
의무관련 공제(총소득의 5% 한도, 1개월 최고 108,000 한도)	1,296,000
Jamsostek	전액
연금 (총소득의 5% 한도, 1개월 최고 36,000 한도)	432,000

□ 부가가치세

○ 대상 :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세율 :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음

나. 베트남

□ 법인세

○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8%임. 우대세율은 해당 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

<법인세 우대세율>

우대세율	적용대상	적용기간	면제기간	감세기간
20%	일반우대산업(A) or 일반우대지역(B)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2년	이후 5년간 50% 감세
15%	일반우대산업(A) and 일반우대지역(B)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3년	이후 7년간 50% 감세
10%	특별우대산업(AA) or 특별우대지역(BB)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4년	이후 9년간 50% 감세

예) 15% 우대세율 적용받고, 2007년 영업을 개시한 경우,
- 최초이익이 2008년에 발생했다면 그전까지 0% 적용,
- 최초이익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인 2010년까지 0% 적용,
- 이후 7년간 50% 감세이므로, 2017년까지 7.5% 적용,
- 2018년 우대세율 15%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후인 2019년부터는 정상법인세 28% 적용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월 급여)

베트남인		외국인	
VND	Rate(%)	VND	Rate(%)
0~5,000,000	0%	0~8,000,000	0%
5,000,000~15,000,000	10%	8,000,000~20,000,000	10%
15,000,000~25,000,000	20%	20,000,000~50,000,000	20%
25,000,000~40,000,000	30%	50,000,000~80,000,000	30%
40,000,000 이상	40%	80,000,000 이상	40%

주) US$ 1 = VND 16,010 (2007. 1. 1 현재)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다. 태국

□ 법인세

○ 법인 및 파트너쉽 기업은 태국내 및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세금목적의 법인 및 파트너쉽은 사기업 및 상장기업, 일반 등록기업, 파트너쉽, 조인트벤쳐, 기관 및 협회로 정의되며, 일반 형사 및 상법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음.

○ 외국 기업의 지사는 태국 내에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법인 및 파트너쉽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이 규정되며, 태국의 내국세 코드에 의해서 부과됨.

□ 개인소득세

○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태국의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10월 이듬해 9월) 이 아닌 칼렌더 기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함. 과세대상은 자연인, 비법인 개인체, 비법인 파트너쉽 (비등록 일반 파트너쉽), 사망한 해 과세수입 및 재산보유 사망자, 사망자의 비분할 재산 등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됨.

○ 과세기준은 모든 과세수입에서 지출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됨. 세금은 과세 기준에서 누진율을 적용하여 5-37%까지 부과됨. 과세대상은 태국에서 연간 180일 이상을 거주한 개인이며, 과세기준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획득한 모든 수입과 태국 내로 송금된 소득도 포함됨. 그러나 비 거주 개인은 태국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됨.

<개인소득세 세율 및 세액>

과세대상 연간소득(바트)	세율(%)
0~100,000	0
100,001~500,000	10
500,001~1,000,000	20
1,000,001~4,000,000	30
4,000,000 이상	37

자료원 : Revenue Department

○ 태국 내국세 코드 제 40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 별 표준 공제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 1992.1.1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별 상업용 물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7%가 부과되며 0% 또는 면제되는 품목도 있음.

○ 부가세 시스템하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원료, 재고, 또는 기타물품, 또는 사업에 사용된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접대비 및 특정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불되지 않음.

○ 무가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도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음. 그러나 부가세 면제대상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부가세 시스템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등록 및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함. 규정된 양식에 따른 세금 인보이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내국세 검사원이 세무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함.

라. 말레이시아

□ 개황

○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되었거나 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소득은 과세 대상. 그러나 거주기업(은행, 보험, 항공,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비거주기업 및 비거주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비과세

<말레이시아 주요세율>

구 분		세율(%)	투자기업 면제기간(年)	초기 자본공제 등 조세혜택
소득세	법인	27%(2007년) 26%(2008년)	개척자 자격(5년~10년) 투자세 공제(5년)	개척자 자격 (소득세 전액면제 또는 부분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자본적 지출액의 전액 또는 부분)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개인	0~28% (차등, 누진세율 적용)	해당사항 없으나, 사안별로 감면 가능	해당사항 없으나, 사안별로 감면 가능
판매세		일반적 10% 특정품목(면세~1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세		5%(일부 면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거주자 원천과세		일반서비스 10% 로열티 10% 이자소득 15% 대중 연예인 서비스소득 1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석유소득세		38%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내 소비세		일부 품목 - 자동차 : 75~105% - 이륜차 : 20~30% - 트럼프용 카드와 마작용 타일 : 1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료원 : 말련 산업진흥청(MIDA)

마. 필리핀

□ 법인세

○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율은 정부의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2005년 1월 부터 한시적으로 35%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2009년 1월부로 다시 30%로 환원될 예정임.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등록기업인 "Resident Foreign Corporation"의 경우, 필리핀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Philippine - source income)의 35%, 비거주 외국기업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의 경우,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수입(Gross Philippine- source income)의 35% 수준의 법인세과 부과됨.

○ 외국기업의 현지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 현지 판매, 제조,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의 과세율이 적용됨.

○ 현지 지사의 과실송금은 일반적으로 송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송금세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필리핀 경제특별구역관리청(PEZA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면세기업은 송금세가 면제되고, 현지 유류사업(petroleum operation) 참여가 허용된 외국기업의 경우, 7.5%의 송금세율이 적용됨.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크게 내국인,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됨.

- 내국인(Resident Citizen)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및 외국인 : 필리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 과세율은 현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180일 이내 25%, 180일 초과 32%)

○ 한국-필리핀 간에 이중조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연간 180일 이상 체류 시에는 필리핀 정부에 32%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80일 미만 체류 시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함.

<내국인 대상 소득세 과세율>

소득 범위	과세금액	해당 소득범위 초과분 과세율
10,000페소미만	없음	5%
10,000페소~30,000페소 미만	500페소	10%
30,000페소~70,000페소 미만	2,500페소	15%
70,000페소~140,000페소 미만	8,500페소	20%
140,000페소~250,000페소 미만	22,500페소	25%
250,000페소~500,000페소 미만	50,000페소	30%
500,000페소 이상	125,000페소	32%

○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액
- 독신인 경우(Single) : 20,000페소
-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가장(미혼 또는 이혼 후 생계 담당) : 25,000 페소
- 혼인한 배우자 : 32,000페소
- 부양가족(최대 4명까지 적용) : 8,000페소/1인당

<현지 거주 외국인 대상 소득세 적용 기준>

월 급여 수준(US$)	과세액(US$)
2,500	737
3,000	897
3,500	1,057
4,000	1,217
4,500	1,377
5,000	1,537

* 상기 과세액은 2002년 3월 31일자 현지화 환율(US$1=54.75페소)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2007년 현재 현지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과세액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식적인 발표 자료는 없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

○ 필리핀 현지의 부가가치세는 내외국기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가 적용되었으나, 2006년 1월부터 부가세율이 12%로 상향조정됨.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품 및 특별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에 소재한 기업들이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됨.

○ 한편, 연간 총수입이 150만 페소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면제 대상.

4. 산업인프라

가. 인도네시아

□ 통신

○ 전화는 호텔, 백화점, 수퍼마켓, 공항 이외에는 공중전화 이용이 어려우므로,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과 통화바우처(5만, 10만루피아)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휴대폰은 GSM과CDMA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되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말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인터넷은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신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임. 인터넷 이용자는 1999년 100만명에서 2005년에는 1,6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2,0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물류(항만, 공항)

○ 국제항구로는 자카르타의 Tanjun Rpiok항 이외에, sekupang항, Batu Ampar항, Nongsa항, Marina Teluk Senimha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항, Bandar Sri Udana Lobam항(이상 Bintan), Belawan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등이 있음

-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650달러 정도 소요됨

○ 인니는 국토의 특성상 육상운송이 낙후되어있어 항공운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 항공사는 국영항공인 가루다 항공을 비롯하여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등 소규모의 국내선 항공사들이 여러 개 있음

- 국제선은 자카르타에서 인근 싱가폴, 방콕, 호지민, 시드니등에 직항편이 운항된다. 한국과의 항공편은 KAL이 매일 1회 운항함

□ 은행(외환)시스템

○ 외환 :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가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음. 단 U$ 10,000 초과 송금 거래는 자금출처 및 자금용도에 대한 확인요구 됨.
(예시) 자금출처 :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등
자금용도 :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은행에서 달러화 인출시 현금인출 수수료(US$1,000 이상은 0.625%, US$10,000 미만은 1%)가 있음

○ 은행 :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Rp)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짐

- 은행의 업무시간은 보통 09시에서 14시30분까지임

<주요 인프라 현황>

구 분		상 태
통신환경		중간
인터넷기반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용형태	ADSL 1 M : USD 2,900/월
공항 및 항만		시설 중간 이하 공항이용료 USD 13
은행시스템		은행이체 소요일 : - 현지화 : 1~2일 - 달러화 : 1~3일 은행이용 수수료 - 현지화 : 기본 6,000 루피아 - 달러인출 : 10,000달러 미만(1%)/이상(0.625%) 이자율 - 현지화 : 약 17% - 달러화 : 약 8%

나. 베트남

○ 베트남의 전화보급율은 45.2%로서 낮은 편이며, 인터넷은 전용선 및 ADSL을 사용하고 있음

○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린 편임

○ 공항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3개의 국제공항과 15개의 국내공항이 있음

<주요 인프라 현황>

구 분		상 태	대 중국대비 비교
통신환경		중간 - 총 전화가입자수: 3,831만명 - 전화보급율: 45.27대/100명 - 총 이동전화가입자수: 2,760만명 - 인터넷 속도는 매우 낮은편	50%
인터넷기반	이용자 수	- 인터넷 가입자수: 452만명 - 인터넷 이용자수: 1,620만명	50%
	이용형태 (예:초고속인터넷)	- 전용선/ADSL	50%
공항 및 항만		- 3개 국제공항(호치민,하노이,다낭), 15개 국내공항 - 총 266개 항구가 있으며, 이중 40,000~50,000DWT급 선박 이용가능 항구는 9개	70%
은행시스템		- 은행이체 소요일 ・베트남내 : 48시간내 ・해외 : 2~3일내 - 은행이용수수료 ・베트남내 : 0.1%내 ・해외 : 0.2%내 - 이자율 : Sibor/Lobor+2%내외	50%

다. 태국

○ 통신환경은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인터넷은 ADSL 및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 이용자 수는 약 1,200만명 수준

○ 공항은 총 28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항만은 122개가 있음

○ 전체적인 인프라는 중국 동부지방과 비슷한 수준

<주요인프라 현황>

구 분		상 태	대 중국대비 비교
통신환경		발달(편리)	0
인터넷기반	이용자 수	1,200만 명 이상(2006말 기준)	0
	이용형태 (예:초고속인터넷)	ADSL 및 초고속인터넷	0
공항 및 항만		발달 공항수 총 28개 항만수 총 122개	0
은행시스템		예금 이자율 : 1. Current 0% 2. Savings 0.75% 대부 이자율 : 6.85% 이상	0

주 : 중국동부지방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라. 말레이시아

○ 통신환경은 비교적 발달되어 이동통신 보급률이 80%에 육박함

○ 공항은 쿠알라룸품의 국제공항이 현재 연간 2,500만명의 여객처리 능력을 보유

○ 항만은 말련 중부에 소재한 클랑항이 제1항구로서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50%를 차지

<주요인프라 현황>

구 분		상 태	대 중국대비
통신환경		발달(편리), 이동통신 보급률이 80%에 육박	+30%
인터넷 기반	이용자 수	다이얼 업 방식: 1,129만 명(추정)	
	이용형태 (예:초고속인터넷)	초고속 인터넷(100명 중 가입율 -3.3%) : ADSL, SDSL, Wireless 등 다이얼업 방식(100명 중 가입율 : 14%)	+0%~20%

구 분	상 태	대 중국대비
공항 및 항만	국제공항은 '98년 6월말 개장된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를 비롯,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Senai(Johor Bahru), 동 말레이시아에 Kuching, Kota Kinabalu. 국제항구로는 콸라룸푸르 인근지역에 KELANG, 반도 북부에 PENANG, 반도 남부에 PASIR GUDANG, Tanjung Pelepas, 반도 동부에 KUANTAN, 동말레이시아에 BINTULU 등	+0%~20%
은행시스템	은행이체 소요일-일반적으로 당일 이내 은행이용 수수료(대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저렴) 이자율 1일 정책금리: 3.5%(2007년 8월 현재) 은행별 기본대출금리(Base Lending Rate): 연 6.25~6.80% 수준	+0%~20%

자료원 : 말련 산업진흥청(MIDA)

마. 필리핀

□ 통신

○ 1993년부터 1개사 통신독점체제를 개혁하여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복수 통신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전화라인 설치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화망 확충에 노력한 결과 전화보급이 상당히 늘어남

○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에게는 전화가 사치품에 속하고 전화 보급률도 낮은 수준이며 공중전화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들과의 연락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있음. 최근 저가 단말기 보급 및 이동통신사간의 가입자유치 경쟁 등으로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도 이동전화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교통 및 물류

○ 필리핀의 운송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함. 내륙운송은 거의 대부분 도로운송이며 철도운송은 거의 없는 실정. 7,1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관계로 도

로운송에도 한계가 있으며,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도 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함.

○ 또한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 외국회사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 선사들이 노선별로 독점 또는 과점-담합을 하고 있어 해상 운송비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음. 육상운송의 경우에도 총 운송비가 실질적인 트럭운송비의 4-5배가 되는 등 운송부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의 경우 입지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은행(외환) 시스템

○ 1993년 4월 13일 결정되어 신문지상에 공포된 중앙은행의 Circular No.1389로 외환의 자유화 조치로서 일부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외화 소지 및 자유로운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수출대금을 10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환 자유화 추진

구 분		상 태
통신환경		중간
인터넷 기반	이용자 수 (가입자 기준-2005)	1,440천명
	이용형태 (예:초고속인터넷)	모뎀, ADSL
공항 및 항만		미발달(불편)
은행시스템		1. 은행이체 소요일 : - 같은 은행일 경우 : 당일 - 타 은행일 경우 : 이체 불가 2. 은행이용 수수료(ATM 출금 기준) : - 같은 은행일 경우 : 무료 - 타 은행일 경우 : 제휴은행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이나, 제휴은행이 아닐 경우 건당 20~30페소 부과. 3. 이자율(BPI 은행 - Saving Account 기준) : - 페소 예금 : 0.625% - 달러 예금 : 0.5%

* 대중국 대비 수준은 판단 기준 데이터 미보유

5. 주재국내 글로벌 기업공장 진출동향

가. 인도네시아

구 분	진출동향	진출 주요 이유	진출시 고려 요소
PT. Petronas Niaga Indonesia (Malaysia)	ㅇ기진출 - 석유 및 가스부문	ㅇ자원개발 - 최근 팜오일 부문 투자를 위하여 주요 팜오일 재배지역 확보	ㅇ풍부한 인니의 석유 및 천연가스 ㅇ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미래시장 준비 ㅇ시장인접성
PT. Toyota Astra Motor	ㅇ기진출 - 자동차 제조분야	ㅇ생산공장 설립	ㅇ인니 자동차시장 육성정책 ㅇ시장성장
PT. Philip Morris	ㅇ기진출 - 담배제조 분야	ㅇ기존회사 인수 - 당시 3위업체를 52억불에 인수	ㅇ시장성
PT. BHP Billiton Indonesia (UK / Australia)	ㅇ기진출 - 광산 및 자원개발	ㅇ자원개발	ㅇ인니 석탄 매장량
PT. Coca-Cola Bottling Indonesia	ㅇ기진출 - 음료 제조 및 유통업	ㅇ생산공장설립	ㅇ많은 인구(세계4번째)에 기반한 수요
PT. Royal Doulton	ㅇ기진출 - 자기 제조 - 지금까지 7,500만불 투자하였으며, 추가로 3,000만불 투자계획	ㅇ생산공장 설립	ㅇ원재료 확보 ㅇ생산비 절감
PT. Bridgestone Tire Indoneisa	ㅇ기진출 - 타이어제조	ㅇ생산공장 설립	ㅇ시장확보 ㅇ생산비 절감

나. 베트남

구 분	진출동향	진출 주요이유	진출시 고려한 요소 (우선순위 3가지)
P&G Vietnam	- 기진출 및 운영단계	- 생산공장 설립 - 내수시장 진출 - 수입관세 회피	-내수 시장 잠재력 -저임의 노동력 -투자인센티브(법인세우대혜택)
Coca Cola	- 기진출 및 운영단계	- 생산공장 설립 - 내수시장 진출 - 수입관세 회피	- 내수 시장 잠재력 - 저임의 노동력 - 투자인센티브(법인세우대 혜택)
Intel	- 2006년 투자허가를 받고 공장설립 계획중	- 생산공장 설립 - 제3국 수출	- 저임의 노동력 - 젊은 노동력 - 투자인센티브(법인세우대 혜택)

다. 태국

구 분	진출동향	진출 주요이유	진출시 고려한 요소 (우선순위 3가지)
Toyota	ㅇ기 진출및 운영단계	ㅇ생산공장 설립	저임의 노동력, 태국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수입관세 절감
Nissan	ㅇ기 진출및 운영단계	ㅇ생산공장 설립	상동
삼성전기 및 전자	ㅇ기 진출및 운영단계	ㅇ생산공장 설립	저임의 노동력, 시장성, 태국정부의 적극적 FTA 추진
LG 전자	ㅇ기 진출및 운영단계	ㅇ생산공장 설립	상동
소니	ㅇ기 진출및 운영단계	ㅇ생산공장 설립	상동
Kunming Daqian Conveyance (중국)	ㅇ태국 Trans Asia Logistics사와 합작투자 계약 완료 단계	ㅇ물류회사 운영	태-중 FTA, 미래시장잠재력, 태국 정부의 적극적 FTA추진

라. 말레이시아

구분	진출동향	진출 주요 이유	진출 시 고려한 요소
인텔 (Intel)	기 진출 및 운영단계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과 말련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노력	ㅇ저렴한 생산비용 ㅇ기술인력 확보의 용이성 ㅇ말련 정부의 유치노력
델 (Dell)	기 진출 및 운영단계	아세안의 성장가능성 미국 경제의 부진	ㅇ지정학적 위치 ㅇ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 ㅇ기술 노동력 확보
바스프 (BASF)	기 진출 및 운영단계	원료물질(raw material) 확보의 용이성과 높은 시장성	ㅇ우수한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스트럭처(석유화학 단지, 항만) ㅇ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 ㅇ언어와 비즈니스에 뛰어난 인력
소니 (Sony)	기 진출 및 운영단계	시장확대와 말련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ㅇ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 ㅇ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ㅇ정치 경제적인 안정성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법률 및 정책
필립스 (Philips)	기 진출 및 운영단계	아세안 시장의 거점	ㅇ정부의 비즈니스 친화정책 ㅇ말련의 인재교육시스템이 인력확보에 용이 ㅇ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
IKEA	기 진출 및 운영단계		ㅇ지리적 이점 ㅇ발달된 물류 네트워크와 항만시설 ㅇ안정적인 비즈니스와 사회적 환경

마. 필리핀

구 분	진출동향	진출 주요이유	진출시 고려한 요소
TI	○기 진출및 운영단계 ○추가 투자 계획단계	○생산공장 설립	저임의 노동력, 우수한 인력, 생산거점 집중화 전략
인텔	○기 진출및 운영단계	○생산공장 설립	저임의 노동력, 우수한 인력, 생산거점 분산 전략
삼성전자	○기 진출및 운영단계	○생산공장 설립	저임의 노동력, 우수한 인력, 지리적 인접성
한진중공업	○기 진출및 운영단계	○생산공장 설립	저임의 노동력, 우수한 인력, 지리적 이점

6. 주재국 특수상황과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가. 인도네시아

○ 노동의 유연성 부족

-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력 채용에 한계 : 1년 근무당 1개월치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개월치 근속수당

-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고급 생산기술 인력 부족

○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시의 부조리

- 밀수 만연으로 정상적인 수출입에 장애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의식 부족

○ 치안 불안

○ 잦은 테러 사태로 인한 불안 : 2002년 발리 호텔, 2003년 자카르타 메리옷 호텔, 2004년 인니주재 호주대사관, 2005년 발리 식당가에서 자살폭탄테러 발생

- 또한 자카르타는 민생치안이 안전하지 못한 편이므로 체류기간중 각별한 신변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저녁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 가공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

- 투자진출에 대해서는 투자제한규정으로 제한하며, 별도로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만은 없음

나. 베트남

○ 정치 사회적 안정성

- 공산당 1당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의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이어오고 있음

○ 종교적 안정성

- 여러 종교들이 있으며, 이중 불교가 가장 많으나 어느 하나에 편향되지 않아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가공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 : 규제 없음

다. 태국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

○ 2003년부터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 : 아세안자유 무역협정)가 발효되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 실시로 인근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전략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중

○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 사회주의 국가 시장에 대한 우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고, 인구 6,600만명 (2006년 말)으로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2006년 기준 약 US$ 3,074)으로 내수판매도 가능

○ 특히 기존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출산업에 집중되어 일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세율 생활용품의 경우 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태국은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및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시장개방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 보유

○ 최근 들어서는, 2006년 9월 쿠데타이후 군사 과도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태로 정치가 다소 불안한 상황이나 2007년 8월19일 신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오는 12월 경 총선이 있을 전망으로 중, 장기적으로는 다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임.

○ 가공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 : 태국의 경우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가 없음

라. 말레이시아

○ '06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실시한 각국의 기업 우호환경 평가에서 전 세계 175개국 중 25위를 차지. 이번 평가는 비즈니스 시작, 라이센스 획득, 근로자 고용, 자산 등록, 투자자 보호 등 투자자가 직면하게 되는 10개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평가한 것으로 각국의 기업 활동 용이성 및 우호적 환경 정도를 표시

○ 말련은 전년에 이어 연속 25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1위), 홍콩(5위), 일본(11위), 태국(19위) 및 한국(23위)의 뒤를 이음

○ 일부 항목에서 전년대비 저조한 점수를 기록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 특히 라이센스의 처리를 위해 평균 281 단계를 거치게 되어, 아시아 지역 평균인 17.6 단계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관료적 형식주의가 기업 활동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기업 설립 시 9단계를 거쳐 통상 30일 이상이 소요되어 지역 평균 8.2단계를 초과하였으며 자산의 등록에도 평균 144일이 소요되어 지역 평균의 85.8일 보다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공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

- 노동 집약산업 규제 :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RM 55,000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

- 단, 20%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련 정부의 권장활동과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MSC등), 그리고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

마. 필리핀

○ 필리핀은 60년대 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성장 전망이 좋은 국가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후 국내 경제의 독점화, 정부의 폐쇄적 공업화 정책과 부정부패 등이 결합하면서 경제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해 왔고, 현재는 동남아에서도 경제가 낙후된 국가로 전락하였음.

○ 2000년 이후, 필리핀 정부는 제조업과 통신, 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비롯한 전 산업에 대해 독점을 완화하고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자유화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필리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 또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안정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필리핀의 경제회복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소비재 시장의 잠재력은 높으나, 크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비용은 저렴하나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우리 한국기업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신흥 시장으로서 필리핀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 시장 진출의 계기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가공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

- 필리핀의 경우,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IT 및 전자산업 등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III. 최근 한-아세안 FTA출범에 따른 진출 유망분야와 전략

1. FTA 투자, 서비스 협상에 대한 입장

가. 인도네시아

○ 한국-ASEAN 투자 및 서비스 협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ASEAN 각 국가와 공조를 취하는 입장임

- 서비스시장의 발전속도를 고려하면서 분야별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
- 비공식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당초 서비스협정을 상품협정과 분리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임

○ 서비스부문에 대한 협상이 원만이 진행되는 것에 비하여,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안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부문에 대한 타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임

나. 베트남

○ 베트남의 FTA 현황

- 베트남은 현재까지 ASEAN과 FTA를 체결했고, ASEAN이 중국, 한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ASEAN 회원국으로써 함께 적용받고 있음
- 모두 상품분야에 대한 FTA 임

○ 투자, 서비스 FTA에 관한 베트남 입장

- ASEAN과 투자, 서비스 FTA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없는 상태
- 투자, 서비스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다. 태국

□ 적극적 FTA 추진

○ 2007년 8월 말 기준, ASEAN 및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일본과는 2007년 4월 양국간 체결이 이루어진 상태

○ 이외에 인도, 중국, 바레인 등과는 일부 품목에 대한 early harvest 성격의 관세인하를 실시 중에 있기도 함.

○ 미국, 인도, 바레인, 페루, 파키스탄 등과 FTA 체결을 동시 추진 중이었으나 2006년 9월 군사쿠데타 이후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투자, 서비스 협상에 대한 주재국 입장(금융, 법률, 교육, 의료, 방송, 통신 등)

○ 국경 간 거래 허용 문제

- 태국은 오래 전부터 금융, 통신, 토지소유, 국내운송, 증권예탁(Securities Depository)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미국에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를 허용해왔음.

- 태국은 추후에도 금융 및 통신 분야는 국가안보차원에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 국내규제(스크린쿼터 등)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의 규제폐지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주된 입장

○ 미국과의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현행 태국의 외국인 지분 제한 등 투자규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음. 특히, 보험회사 및 지사 설립의 자유, 지사 설립 없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투자규제 폐지 요구 수준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태국 정부 입장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음.

라.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대 한국 FTA 투자, 서비스 협상에 대한 입장은 우선적으로 ASEAN 을 통한 연내 협정체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원칙. 이미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상품교역이 6월 1일 부로 시행에 들어간 만큼, 투자·서비스 협정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 한국 투자 서비스협정에 임하는 자세는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ASEAN 을 앞세우는 조심스러운 입장. 이는 서비스 투자·부문의 FTA 체결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장관, Datuk Seri Rafidah Aziz 는 2007년 7월 16일 'Business Opportunities In Malaysia' 세미나에 참석해, 6월 1일 발효된 한 아세안 FTA 상품협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45%의 한국 상품들이 5% 이내의 저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특히 한-말련 간의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또한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한 한-아세안 협정 역시 올 해 말 타결될 것으로 전망. 한국과 말련 양국이 공히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교역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가진 만큼, 향후 포괄적인 FTA 협정과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또한 Rafidah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5억 6천만 아세안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게는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힘.(BERNAMA, 16 July 2007)

○ 통상산업부(MITI) 차관인 Datuk Ahmad Husni Hanadzlah 는 2007년 콸라룸푸르 경기우수상품전 행사에 참석해, ASEAN 과 중국과의 FTA, 말레이시아와 일본 간의 경제협력협정(EPA) 등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아세안 간 서비스 투자 부문 FTA 협정이 체결되면, 말련과 한국 간의 교역 및 투자 역시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Bernama 30 May 2007)

마. 필리핀

○ 한국의 수출경쟁국인 일본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FTA보다 광범위한 EPA(경제연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일본 EPA는 2006년 9월 체결되었으며,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효될 전망임.

- 일본은 필리핀을 동아시아 EPA 블록에 끌어 들이고 필리핀을 첫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로 선택하였음.

○ 한-아세안 FTA 체결은 일본, 중국 등 수출경쟁국의 필리핀 시장 확대를 견제할 수 있으며, 필리핀은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이므로 상품, 서비스 뿐 아니라 투자, 지적재산권, 인적교류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면, 한국과 필리핀 상호간 무역투자 증대를 기할 수 있고 상호 보완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인력시장 개방에 관심이 높으며, 특히 간병인 등 인력 수출을 희망하고 있음.

2. 투자진출 유망분야와 전략

가. 인도네시아

□ 투자진출 유망분야

○ 인도네시아 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정부, 바이오에너지 대대적 개발 검토중

○ 전통 제조업 분야(섬유, 신발, 전자, 자동차, 해운업)

-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건비 및 노동법 문제로 현재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나 충 분한 양질의 노동력이 상존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인니 이동통신시장의 확대에 따라, 통신라인 구축, 기지국 건설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유망

- 또한 정보통신 콘텐츠도 성장가능

-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 e-Government 구축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World Bank, Asia Development Bank 등 기관지원 인도네시아 인프라구축 예상 프로젝트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 원유, 천연가스, 석탄, 동광, 주석 등 지하자원과 목재, 팜 오일 등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투자 분야

□ 진출전략

○ 마케팅 및 유통전략 혁신으로 내수시장 공략강화

- 과거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으며, 내수판매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서부 자바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왔음

- 2억4천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을 위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지 소비계층의 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전국적 판매망 확보 및 판매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함께 소비시장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현지화로 사업기반 정착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중 일부는 필요 설비와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여 조립·생산하고 있어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현지 투자수요 및 기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업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외국기업에게 부품과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괄생산 방식으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R&D 비중을 높이고 현지부품 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현지시장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아울러 투자기업의 주요 직책(중간관리자등)에 현지인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현지인들을 관리하는 등 경영의 현지화도 필요한 상황임

○ 역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장 확대

- 현재까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제3국에 판매하는 단선적 생산 및 판매 방식을 취해 왔으나, 한 아세안FTA 발효 등 아세안내 역내분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투자진출 업체의 생산 및 판매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동남아 각국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분산시키는 네트워크형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베트남

□ 투자진출 유망분야

○ 생산.수출거점으로서의 투자

- 베트남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 베트남내 생산후 제3국 수출하는 형태

- WTO 가입 및 미국과 PNTR(항구적 무역 정상관계) 체결에 따라 대외적인 수출 제한 해제

- 특히, ASEAN 역내국 수출시 최대 5% 수입 관세만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 부동산 개발

-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부동산(아파트, 오피스빌딩, 호텔, 리조트, 산업 단지 개발 등) 관련 외국인투자에는 아무 제한이 없음

- 급증하는 수요 대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

- 빌딩건설의 경우 현지업체와의 합작, 인프라건설의 경우 BOT, BTO, BT 방식이 선호됨

- 빌딩건설시 합작이 선호되는 이유는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과 합작을 하여 국영기업은 토지소유권으로 출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을 대는 형식임. 또한 토지보상과 토지수용(Clearance) 문제를 현지 합작사가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부동산 개발은 베트남 투자법상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으로 투자허가를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우며, 토지값이 많이 올라(호치민시 1군지역은 평당 3,000만원선) 사업추진이 쉽지 않음

□ 진출전략

○ 투자 분야 다양화 필요

- 8천만 인구의 시장,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 국가, 대표적인 한류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인 생산수출거점으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래시장의 선점이라는 전략도 함께 고려되야 할 시점

- 지금까지는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베트남 주요 산업에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들의 전략적 진출 필요

○ 투자 지역 다변화 필요

- 2006년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베트남 투자열풍으로 인해 대도시 인근지역 공단은 이제 포화상태에 이름

- 남부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제조업 투자가 이뤄진 호치민시 인근의 동나이성과 빈증성의 경우 이제는 입주 가능한 공단 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

- 또한 이들 지역의 경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하며, 그러한 비용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따라,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 호치민시 인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Tay Ninh, Long An 등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외곽지역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 해야할 것으로 전망

○ 시장 선점형 투자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 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아직 시장이 선점되지 않은 서비스업종(도소매/유통업, 프랜차이즈, 물류 등)에 대한 시장 선점형 투자 전략 필요

다. 태국

□ 투자진출 유망분야

○ 환경 산업 분야

- 환경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경우 아직 관련 법규나 제도가 미비하거나 있어도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관련 기술, 기기등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편, 환경산업 분야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요 수요자인 특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입찰에 대비해 제품에 대한 기술우위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마케팅을 통한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함

-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의존도가 높은 태국 수요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며,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선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T 분야

- 2007~2008년 태국의 ICT시장 및 IT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0%가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요 동인은 주로 정부, 교육계, 기업일 것으로 보이며, 국제 유가, 인플레이션, 각종 규제도 시장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기술 부분에서는 Dual Core Processors, VoIP, Wi-Fi 및 Wi-Max, RFID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태국 ICT시장의 밝은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IT강국이라는 이미지가 현지 수요를 계속 자극하고 있음. 또한, 최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IT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미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MP3 시장에는 삼성 등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관련 업계의 추가 진출 움직임도 계속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분야 진출 시 투자권익 보호에 유의

○ 태국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서 외국인 투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설립을 컨설팅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내용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법규정 확인을 통한 설립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태국정부의 인센티브제도 적극 활용

○ 태국 정부는 투자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BOI를 통한 투자 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법인 설립 후에도 각종 행정적인 절차와 부가세 환급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BOI를 통한 투자가 바람직.

라. 말레이시아

□ 투자진출 유망분야

○ 전기·전자 산업

- 한국기업의 말련 투자 유망분야는 여전히 전기·전자 산업. 특히 LCD와 플라즈마 TV 패널 공장유치를 위해 말레이시아 중앙정부는 물론 페낭주 정부에서도 수차례 한국기업에게 투자유치 오퍼를 하였음. 다만 LCD와 플라즈마 TV 조립 공장은 삼성전자와 한팩 테크날러지에 이어 일부 기업들이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준비

○ 석유화학 산업

- 유가의 급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기. 특히 말레이시아 내 원유생산 및 석유화학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의 빈투루(Bintulu)라는 도시는 전례 없는 호황. 최근 남해화학은 멜라민 수지 생산 공장에 투자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MSC 지위(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로서 입주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 외국인 고용 자유, 해외 송금 자유, 벤처 자금 활용 등의 혜택이 있음) 보유 기업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각종 고지서 전산화, 교통 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 분야 등에서 영업

- 유망 부문 : PC 게임, Online 게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 물류 산업

- 말레이시아의 로지스틱 서비스(물류서비스) 업체들은 포워딩, 창고임대 및 운송은 물론, 최근 부품 유통, 조달, 공급자 관리망 구축(Supply Chain Management)을 통해 사업을 확장.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물류서비스 사업자(PLs - Party Logistic Service Provider)가 기존 포워딩과 운송 전문의 2PLs 사업자와의 인수 및 합병으로 서비스를 통합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3PLs의 역할을 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싱가포르를 물류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창고 및 운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말레이시아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한국과 태평양으로 가는 물동량이 지속 증가 추세. 현재 우리나라의 3대 해운사는 물론 고려해운 등 중견 해운업체 모두가 진출

○ 생명과학(biotechnology)

- 생명과학 산업은 말레이시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유망분야 : 농업생명과학(Agricultural Biotechnology Development)
  의료생명과학(Healthcare Biotechnology Development)
  산업용생명과학(Industrial Biotechnolgy Development)

○ 아시아 지역본부, 국제 조달센터 등 허브 기지로 활용

- 말레이시아를 아시아지역본부로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이나 한국기업이 갈수록 증가. 1990년 이후 총 133개사의 해외 주요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지역본부(opertational headquater)를 설치하였으며, 이 중 미국업체 26개사, 일본업체 14개사, 독일 업체 12개사, 영국 업체 10개사, 네덜란드와 호주 업체가 9개사가 설립.

- 국제 물품 조달 센터(IPC- International Procurment Center)로는 지금까지 총 191개가 설립. 이 중 일본이 전체 센터중 85개를 설립하였으며, 미국이 13개의 센터를 설립. 전기・전자업체와 화학 및 기계류, 가구 제조업들이 주로 국제조달 센터를 설립, 영업

□ 진출전략

○ 현지의 시장 특성 파악이 1순위

- 말레이시아는 국민의 6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하지만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고, 또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투자 전략이 필요함. 또한 중요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고위급 인사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아세안 FTA 이점을 활용

- 한·아세안 FTA 로 인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매력이 증가한 만큼, 각 업체별로 FT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동남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를 아세안 공략을 위한 지리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음.

- 한·아세안 상품 부문 FTA가 이미 타결되었고, 서비스·투자 부문 FTA의 연내 타결이 기대되는 만큼, 동남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업체들의 투자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투자 유치지원정책 활용

- 말련은 자국 산업발전을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말련은 유망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함

○ 투자제한 요소 사전검토 및 투자승인 라이센스 획득 조건 검토

-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또한 말련은 각종 라이센스 발급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마. 필리핀

□ 투자진출 유망산업

○ 광산 개발업

- 필리핀 광산 및 지구과학국(Mines and Geosciences Burea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전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 특히 금속성 광물

자원은 총 8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2004년 기준)은 약 99만 톤으로 총 매장량의 약 0.117%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자원개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잠재 광물자원이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체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95년 「광업법 (Philippine Mining Act - Republic Act 7942)」과 2004년 1월에 「행정 명령 270호(Executive Order No. 270)」을 제정,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IT 산업

-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7,1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무선통신과 관련된 위성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투자가 유망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저렴한 영어구사 가능 인력의 풍부로 인해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전 세계에서 문의되는 고객문의에 응답하는 역할을 하는 Web / Call Center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인식되어 있으며, 코닥(Kodak) 및 MSN사 등이 자신들의 제품 A/S 및 Q/A 기지로 Web / Call Center를 활용하고 있음.

□ 진출전략

○ 무역과 투자의 양 측면에서 필리핀이 보유한 다양한 장점들과 사업기회들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의 적절한 결합을 추구해야 함.

- 현지생산이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초기에는 당분간은 수출 중심으로 진출하고 현지 마케팅 등에서 소규모의 투자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함.

- 직접투자 진출시, ASEAN 지역 전체를 겨냥한 생산거점 확보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ASEAN 단일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생산설비를 집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함.

- 투자의 중심은 노동집약형 경공업보다는 현지 인력으로부터 중간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중화학공업 분야가 바람직함. 필리핀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공업화도 미성숙 상태지만, 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가 적어 중간급 기능인력과 관리직 인력의 임금수준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 낮고, 대학과 기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신규 인력도 풍부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내수 및 수출 비중을 관리해야 함. 현재 필리핀은 소비시장 공략형 투자지로서의 매력보다는 생산거점형 투자지로서의 매력이 보다 크지만, 향후 필리핀 경제의 안정성장에 따라 빠르게 성장가능성 있는 소비시장도 미리 대비해야 함

3. 종합평가

○ 아세안 주요 5개국의 투자여건을 비교시, 각 국별로 진출이 양호한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과거 전통적인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 신발, 단순 전기전자 부품 등 제조업의 경우는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이 유리

- 아세안 5개국 대비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임의 인건비가 잇점으로 나타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분야여건이 비교우위임

-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4천만을 바탕으로 한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재품 제조업 분야도 유망.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석유대체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도 유망

○ 베트남의 경우 비교적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내 생산후 제3국 수출하는 형태의 생산거점형 투자가 유망

- 베트남은 8천4백만명의 인구로 시장성을 갖추고 있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진출도 유망

○ 이 밖에도 필리핀은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광산개발업 분야 진출이 유망하며,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감안한 무선통신 서비스 등의 IT 분도 투자유망. 필리핀 투자시에는 불안한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함

- 필리핀도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나, 임금이 인도네시아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빈부차가 비교적 심해 상위 고소득자는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나 대부분의 국민은 빈곤한 생활로 구매력이 약한 실정

○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전통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 첨단 전기전자 및 IT분야 투자진출이 유망. 특히 말레이시아는 싱가폴과 함께 아시아지역 물류기지로서 활용가치가 있음

- 말레이시아, 태국은 동남아 국가중에서도 통신, 교통, 공항, 항만 등이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임금수준도 높은 편임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2007.5
07-018	WTO 가입 후 베트남 섬유산업 환경변화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07.6
07-019	대중수출 품목구조 변화와 주요 요인	2007.6
07-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7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7.6
07-021	인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전망	2007.6
07-022	북중변경무역현황과 전망	2007.6
07-023	M&A를 통한 중국 진출 전략	2007.6
07-024	미래를 위한 준비, 중동의 탈석유화 정책	2007.6
07-025	중국 증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2007.7
07-026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현주소	2007.7
07-027	아세안을 잡아라1-아세안 주요시장 수출유망 품목	2007.7
07-028	중국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중 FTA - Grand Survey 2007	2007.7
07-029	사례로 보는 신흥시장선점 효과	2007.7
07-030	일본 통신판매 시장현황 및 한국기업 진출방안	2007.7
07-031	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에 대한 현지 대응사례 및 시사점	2007.7
07-032	북미시장 핵심 소비계층,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2007.7
07-033	한중수교 15주년, 중국이 평가한 한국과 한국기업 경쟁력 현황	2007.8
07-034	뉴질랜드를 통해 살펴본, 국가브랜드 전략 성공 키워드	2007.8
07-035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반응조사	2007.9
07-036	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2007.9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07-004	2006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 결과보고서	2007.6
07-005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6
07-006	유럽 완성차 기업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현황 및 Tier1.2 동향 조사	2007.6
07-007	브라질 비즈니스 가이드	2007.6
07-008	중국투자실무가이드/증보판	2007.7
07-009	2007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0	2007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7.7
07-011	일본의 국가브랜드 육성전략	2007.7
07-012	중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3	대만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4	일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5	베트남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6	인도네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7	캄보디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8	인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19	태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0	필리핀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1	방글라데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2	말레이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3	미얀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4	아랍에미리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5	이집트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6	나이지리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7	알제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8	미국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29	캐나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0	브라질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1	멕시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2	독일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3	폴란드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4	체코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5	슬로바키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6	헝가리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7	루마니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8	터키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39	러시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0	카자흐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1	우즈베키스탄 투자핵심가이드	2007.7
07-042	2007 서울국제식품전, 2007 서울국제식품기술전 종합결과보고서	2007.7
07-043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7
07-044	중국 新노동계약법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07.7
07-045	한눈에 보는 중국 주요도시 투자환경	2007.8
07-046	중남미 IT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7.8
07-047	설명회 CRM 무작정 따라하기	2007.8
07-048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2007.9
07-049	유럽 주요국 자동차부품 After-saler Market 진출 가이드	2007.9
07-050	사모펀드 이야기	2007.9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7.4
07-004	발칸국 투자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2007.5
07-005	중국 투자환경 이렇게 바뀐다!!!	2007.5
07-006	한미 FTA 활용, 산업별 대미진출전략 설명회	2007.6
07-007	이란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8
07-008	UAE 투자환경 세미나 참고자료	2007.9

작성자

◈ 김현철 차장 (자카르타 무역관)
◈ 안유석 과장 (호치민 무역관)
◈ 이성훈 과장 (방콕 무역관)
◈ 서정학 차장 (쿠알라룸풀 무역관)
◈ 홍창석 차장 (마닐라 무역관)
◈ 김희중 차장 (아대양주팀)

Global Business Report 07-037

아세안을 잡아라 2

아세안 주요국 투자여건 비교분석

-투자유망분야와 진출전략제시-

발 행 인 | 홍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7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